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 [채권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모투자신탁에 의 투자 한도 범위 변경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 른다.</p> <p>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 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트러스톤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 신탁[주식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다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 른다.</p> <p>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 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트러스톤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 신탁[주식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만으로 한다.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-	<신 설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3월</u> <u>2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